

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8년 9월 18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 박 상 기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5755호

상법 일부개정법률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)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)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.

제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)

-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

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4조(계약의 종료)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.

- 1.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
- 2.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
- 3.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

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8조(퇴사원인)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.

- 1.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
- 2. 총사원의 동의
- 3. 사망
- 4. 성년후견개시
- 5. 파산
- 6. 제명

제2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4조(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)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.

제542조의8제2항제1호 중 “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,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민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

현행은 영업허락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유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“한정치산자”를 규정하고 있으나, “피한정후견인”은 원칙적으로 능력자이며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“피한정후견인”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행 “한정치산자”를 각각 삭제하는 한편,

또한 현행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“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”는 “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